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훈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8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8.

발 의 자 : 이훈기·박 정·이용우
오세희·허종식·조계원
이재관·박해철·허성무
김 윤·장종태·김동아
박지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·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함)는 각종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, 피해자의 유골을 발굴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나, 2025년 5월 조사기간 만료로 그 활동을 종료하게 되었음.

그러나, 조사기간 만료에 따라 조사가 완료되지 못한 사건이 약 2천 건 이상이고,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·의문사 사건과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등이 현행법상 진실규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진실규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, 위원회의 일부 위원 및 직원의 편향된 시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음.

이에 제3기 위원회의 출범을 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진실규명 범위에 성폭력 사건 및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,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등 제2기 위원회의 운

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충실한 진실규명활동을 보장하려는 것
임(안 제2조제1항 및 제4조 등).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2호 중 “제7542호”를 “제00000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권위주의 통치시”를 “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”으로, “현저히 부당한”을 “부당한”으로, “사망·상해·실종사건”을 “사망(의문사를 포함한다)·폭력(성폭력을 포함한다)·상해·실종·고문·구금사건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민관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(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

제4조제1항 중 “3명”을 “4명”으로, “9명”을 “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”으로, “8명”을 “10명”으로, “4명”을 “5명”으로, “그 외 교섭단체가”를 “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”로, “4명으로”를 “5명

으로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”을 “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”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및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
6.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현저히 방해한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
7.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제19조제2항 중 “제17392호”를 “제00000호”로 한다.

제2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체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구성과 사무처 등 필요한 조직의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,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,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.

제3조(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) 이 법 시행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진실규명에 관한 경과조치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접수한 사건 중 조사기간의 제한으로 진실규명이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가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라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.

제5조(기록물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등)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위원회가 보유한 기록물(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)은 이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승계하여 관리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진실규명의 범위)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·화해를 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.	제2조(진실규명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(법률 제7542호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)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	2. ----- -----제00000호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<u>사망·상해·실종사건</u> ,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사건	4. -----국가인 <u>권위원회 설립 이전</u> ----- -----부당한----- ----- -----사망(의문사를 포함한다)·폭력(성폭력을 포함한다)·상해·실종·고문·구금사건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6. (생 략)

② (생 략)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(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,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)을 대통령이 임명한다.

6.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·감독을 받는 민관기관이 운영한 집단수용시설(사회복지기관을 포함한다)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

7. (현행 제6호와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-----4명-----11명
-----.

② -----제2조제1항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-----

-----10명-----

-----5명--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-----

-----5명으로-----

-----.

1. <u>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</u>	<u><삭 제></u>
2. <u>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</u>	<u><삭 제></u>
3. <u>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</u>	<u><삭 제></u>
4. <u>성직자 또는 역사고증·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</u>	<u><삭 제></u>
5. <u>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</u>	<u><삭 제></u>
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,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<u>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</u> ,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 <u>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2명</u> ----- -----.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제9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----- -----

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(생 략) 제19조(진실규명 신청) ① (생 략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이 법 시행일(법률 제17392호 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말한다)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③ (생 략) 제29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·② (생 략)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	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및 중대한 역사적 사건의 진실규명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거나 왜곡한 자 6. 위원회가 조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규명을 현저히 방해한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자 7. 그 밖에 위원회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진실규명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제00000호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29조(공무원의 파견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
---	--

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<단서 신설>

<신 설>

--. 다만,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이 위원회 업무에 불성실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체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신속하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